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 해상적하보험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적하보험 보험증권(Insurance Policy)</li> <li>• Master 및 House B/L(선하증권)/AWB(항공화물수취증) 및 이면약관</li> <li>•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li> <li>• 수량 및 중량명세서(Packing list)</li> <li>• 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li> <li>• 보험금신청서/사고경위서(유첨): 예상손해액 반드시 기재요망</li> <li>• Notice of Claim(보험금신청서 참조): 최종 B/L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작성요망</li> <li>•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유첨): 날짜기재/명판날인</li> <li>• 화물의 손상사진</li> <li>• 인도인수증(Delivery Note / Receipt / Tally Sheet)</li> </ul>
항공 화물 추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화물실시명세서(Cargo Inspection Report / Convention): 항공사에 요청</li> <li>• 포장당 분실의 경우: 항공사의 분실확인서</li> </ul>
해상 LCL 추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창고입고확인서(Cargo boat Note / Warehouse Convention / Outturn Report/ Devanning Report / Unstuffing Report): 보세창고(CFS)에 요청</li> <li>• 적하목록(Consolidated Manifest): CFS 에 요청</li> </ul>
해상 Bulk 추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적부계획도(Stowage Plan): 하역사에 요청</li> <li>• 양하협정서(Outturn Report / Convention / Cargo Boat Note): 하역사에 요청</li> <li>• 화주측 또는 하역사측 Surveyor 의 보고서(Survey Report)</li> <li>•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선사에 요청</li> <li>• 해난보고서(Sea Protest) 및 항해일지(Log Book): 선사에 요청</li> <li>• Shortage 사고의 경우: 선적항 및 하역항의 계근표(Weighing Slip) / 선적항 및 하역항에서 발행된 흡수검정보고서(Draft Survey Report)</li> </ul>
해상 FCL 추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테이너 운송기사 확인서</li> <li>• 화물적입보고서(Stuffing Report) 및 화물적출보고서(Devanning Report)</li> <li>• 컨테이너손상확인서(수출국/수입국 Container Damage Report 또는 Exception List)</li> <li>• 기기인수도증(수출국/수입국 EIR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li> <li>• 컨테이너적부계획도(Container Bay Plan)</li> </ul>

## Notice of Claim 문서 안내

보험자가 과실이 있는 운송인에게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Date 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에 사고내용을 통지한 날짜를, TO 에는 선사(또는 항공사)의 영문이름을, Attn 에는 담당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오며, Tel 및 Fax 번호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명판날인하신 후 선사(또는 항공사) 및 포워드에게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시고 저희에게 CC 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Notice of Claim 은 피보험자가 화물손상에 대하여 양하시점에서 기산하여 항공운송업자(실제운송항공사 및 포워드)에게는 14 일 이내에, 해상운송업자 에게는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기일내 운송인에 대한 서면 사고통보 불이행시 운송사는 운송증권(B/L 또는 AWB) 이면약관에 의거 운송화물의 손상/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경우(항공운송의 경우)가 있습니다.

## 적하보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보험사고 발생시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시고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사고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Chubb. Insured.™

LINA General Insurance, an independent affiliate of LINA Life Insurance, is the brand name for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송인 수탁인 또는 기타 책임있는 제 3 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의 보전 및 행사
2.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운송인, 혹은 기타 제 3 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보존,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이며 특히 피보험자 및 대리인은;
  - 가. 운송인/항만당국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손상 또는 유실물에 대하여 즉시 보상청구 해야함 (Pre-claim Notice / 운송화물클레임통지서) - 항공일 경우 항공사로 14 일 이내에 접수.
  - 나. 해단보고서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화물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면 무사고수령증을 교부하 면 안됨 (이상이 없다는 수령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손상이 있더라도 수령이후에 발생한 손상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 컨테이너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있는 직원이 즉시 컨테이너 및 해당 봉인을 검사할 것.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 멸실되었거나 선적서류 상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고, 그 봉인을 증거로 보관해야 함.
  - 라.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 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인의 대리인들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 검정시 밝혀진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해야함.
  - 마. 화물을 인수한 때에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면 인수 후 3 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손상내용을 통지해야함.

##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외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에 따라 외부 손해사정사의 동의, 재선임 요청, 거절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선임요청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기준)
  - ①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통보를 한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한다.
    - 가. 보험업법 제 2 조 제 19 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 보험 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 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사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라.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 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보험사기 의심, 부당한 민원 유발, 변호사법 위반 등)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 마.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바. 소비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당사의 손해사정 보수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사. 소비자가 선임 요청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아.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인 경우.
    - 자. 계약 체결에 하자가 있어 판매 조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차. 기타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 등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유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설명·안내를 한다.
  - ④ 회사가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동의 결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외부 손해사정사 선임 통보 이후 3 영업일 이내 선임 관련 동의 여부를 안내하며, 회사가 재선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른 손해사정사를 재선임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병원방문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 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LINA General Insurance, an independent affiliate of LINA Life Insurance, is the brand name for ACE American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y Korea, a Chubb Company.

## 국내 수입건에 대한 사고

---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귀사께서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로부터 통지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아래의 당사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수출건에 대한 사고

---

운송 중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수입자(consignee)가 화물손상을 직접 발견하거나, 운송인(선사& 포워딩 업체)로부터 통지를 받을 경우에, 위의 서류구비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현지Chubb그룹의 지사에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당사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락처(회사명/회사주소/담당자명/연락처,전화번호, E-mail)를 알려주시면 사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 담당자

---

- 수입화물 담당자 연락처: 02-6711-5783
- 수출화물 담당자 연락처: 02-6711-5856